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4.

발의자 : 기동민 · 김민기 · 김영호

김정우 · 신창현 · 이재정

박정 · 노웅래 · 김철민

오제세 · 추미애 · 인재근

의원(12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(이하 ‘생산시설’이라 한다)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,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‘지정취소’를 할 수 있음.

그러나 ‘지정취소’ 처분 시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초 특별법이 목적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음.

또한, 생산시설이 지속 증가('16년 말 기준 492개소)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‘지정취소’라는 단일 처분만으로 생산시설을 제재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, 개선명령,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, ‘지정취소’에 갈음하는 ‘과징금’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

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(안 제10조, 제10조의2).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”를 “그 시설의 개선,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정취소의 절차”를 “행정처분의 세분기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과징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10조제1항제1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지정취소가 해당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 소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,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<u>지정취소의 절차</u>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시</u> <u>설의 개선,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행정처분의 세부 기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의2(과징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10조제1항제1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지정취소가 해당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</p>

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,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